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9. 5.15.(수) 09:3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욱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기에 대한 경례

③ 개회선언

④ 지난 회의록 확인

- 제2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

⑤ 서면회의 결과보고

- 제22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
- 제22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

⑥ 회의공개 여부 결정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

7] 의결사항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9-23-095)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6.12 공포, ‘19.6.13* 시행/’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각 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관련 방통위의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만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 개정안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준비금 적립 등의 범위 및 기준(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안 제18조의2, 별표 1의3 신설, 별표 9 제2호버목 신설)

i)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화

ii) 신생기업 등과 같이 매출액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사실상 규제 준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정 매출액(5천만원) 미만인 경우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iii) 보험(공제)의 최저가입금액(또는 준비금 최저적립금액)은 사업자가 저장·관리하는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하여, 최소 0.5억원~최대 10억원으로 정함(별표 1의3)

iv)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천만원 부과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최저가입금액 기준 >

이용자수 \ 매출액	매출액			
	800억원 초과	5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5천만원 이상 ~ 50억원 이하	5천만원 미만
100만명 이상	10억원 (104만원)	5억원 (52만원)	2억원 (21만원)	면 제
10만명 이상~100만명 미만	5억원 (52만원)	2억원 (21만원)	1억원 (10만원)	
1천명 이상~10만명 미만	2억원 (21만원)	1억원 (10만원)	0.5억원 (5만원)	
1천명 미만	면 제			

※ ()는 예상 월간 보험료

· 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안 제16조의2 신설)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촉진· 지원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제출 요청 및 의견수렴, 행정적·재정적 지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등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계획의 이행결과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심사점수에 따른 유효기간, 이행점검 주기 등을 차등화

·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안 제17조의2 신설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 안 제27조의2 신설)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휴대전화 메시지·신용카드 등을 통한 확인(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

나.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19-23-096~100)

-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해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2019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에 따라 제1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 포르쉐코리아(주), (주)큐알온텍, (주)헨디카 등 3개사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8 기 타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회의는 5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0:01)